

TIPLONews 한국어본

2021 년 1 월호(K257)

K201224Y1

K201204Y1

01 「신생 기업에 대한 긍정적 특허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이 2021 년 1 월 5 일부터 시작

대만 지혜국¹⁾은 「신생 기업에 대한 긍정적 특허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을 책정, 공포했다. 이것은 신생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설계된 것으로, 우선 심사 및 지혜국 주도로 긍정적 면접을 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관이 면접시에 출원 안건의 거절 이유를 설명하고, 출원 안건의 상황에 따라 특허보정의 건의를 하는 것으로, 특허심사 시간을 단축한다.

신생 기업이 우선 심사를 필요로 하는 특허 출원이, 심사를 거쳐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출원에 거절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재국이 자발적으로 출원 후 1 개월 이내 면접 자료를 출원인에게 제공하고 긍정적 면접 시간을 결정하여 심사관이 출원 안건의 상황에 따라 보정할 것을 제안한다.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 또는 보정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류접수 후 1 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신생 기업이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4 개월 이내에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면접 비용도 필요없고 전자 출원 방식을 채용하며 올해 시도 건수를 30 건으로 하고있다. 2021 년 1 월 5 일부터 접수한다. 이에 관한 정보는 대만 지재국 사이트에 게재되어있다. (2020.12)

역주:

- 1) 지혜국은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 智慧財產局)을 이르는 말로 한국의 특허청에 상당한다.

K201224Y1

02 Elan 이 Goodix 을 터치 컨트롤러 관련 특허 침해로 제소

터치 컨트롤러 IC 업체인 Elan¹⁾은 2020 년 12 월 23 일자의 발표를 통하여 Goodix²⁾ 및 Shouhon³⁾에 대하여 지재법원에 이의를 제출하고 Goodix 가 제조 판매하는 터치 스크린을 위한 터치 컨트롤러가 Elan 이 소유한 특허 (특허 제 1556033 호)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주주의 권익과 회사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Elan 은 법원에 Goodix 와 Shouhon 에 특허권 침해 행위의 배제 및 정지를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lan 은 2020 년 12 월초 중국 북경 지적 재산권 법원에 Goodix 와 Xingyi⁴⁾가 자산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Goodix 에 중국화폐 2,500 만원의 배상을 청구하고있다.

Elan 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업계 최초로 터치패널용 터치 컨트롤러 IC 의 밀봉 구조에 관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은 터치 스크린 프레임의 슬림화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각종 모바일 전자 장치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Elan 은 수년 동안 터치 컨트롤러 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있으며, 이미 오랜기간동안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지역에서 터치 컨트롤러 기술에 관한 특허권 수백 건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사의 지재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있다. (2020.12)

역주:

- 1) 중국어 義隆電子股份有限公司, 영어 Elan Microelectronics Corporation (약칭, Elan)
- 2) 중국어 深圳市匯頂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 Shenzhen Goodix Technology Co., Ltd. (약칭, Goodix)
- 3) 중국어 紹宏科技股份有限公司, 영어 Shouhon Technology Co.,Ltd (약칭, Shouhon)
- 4) 중국어 北京星意通達科技有限公司, 영어 Beijing Xingyi Tongda Technology Co (약칭, Xingyi)

K201230Y5

03 대만 경제부는 「중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 제휴에 관한 허가 방법」을 개정

대만의 전문 기술 또는 지적 재산을 중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한 기술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만 경제부는 대만의 산업 발전이 손상되지 않도록 2020년 12월 30일부로 「중국 지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 제휴에 관한 허가 방법」 제 5조를 개정하여 특정 기술의 판매, 구매, 기술 제휴의 형태에 추가하여 대만 산업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공포했다. 그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술 제휴 형태를 확대: 전문 기술 또는 지적 재산권의 양도 또는 사용권은 모두 기술 제휴의 형태로 규정한다.
2. 직간접적인 기술 제휴를 모두 관리: 대만인이 전문 기술 또는 지적 재산을 먼저 제 3 국가 · 지역 기업에 양도 또는 이전한 후 제 3 국가 · 지역의 기업을 통해 중국의 기업에 양도 또는 이전하여 규제 그물에서 벗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고 기간의 의견을 참고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양도 또는 사용권의 행위를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기술의 관리 범위를 확정: 대만 경제부는 예고시에 「집적 회로 배치 설계권」을 관리 대상에 넣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업계의 새로운 지적 재산권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게다가 「집적 회로 배치 설계권」은 이미 「전문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원에서 심사한 결과, 중국에서 「전문 기술, 특허, 상표권 또는 저작권」의 기술 제휴에 종사하는 사람을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기술 제휴 안건은 실무상 모두 사전에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그 심사 절차는 투자심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안건의 처리 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경제부는 본 개정과 동시에 「중국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 제휴에 관한 심사 원칙」의 제 4항을 개정하고, 제 2항에 있어서, 대만인이 중국에서의 기술 제휴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주무 기관에 의한 심사체제를 추가했다. (2020.12)